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영유권조작에 대한 논증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러스크 서한을 중심으로 -

유 병 구*

(email : yourschool@naver.com)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면서 | 23. 러스크편지의 법적 구속력 |
| 2. 일본의 영유권 논리조작 실태 | 24.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역사적 증거 |
| 2.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왜곡된 해석 | 25. 시모조 마사오의 무주지 이론 비판 |
| 2.2. 일본의 조작된 로비활동 | 3. 맺으면서 |

키워드 : 독도(Dokdo), 竹島(Takeshima), 리앙쿠르 바위(Liancourt Rocks), 마크 로브모(Mark Lovmo), 마이론 노드키스트(Myron H. Nordquist)

1. 들어가면서

일본 시마네현(島根県) 죽도문제연구회(竹島問題研究会)는 1951년 9월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이 마치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 죽도문제연구회는 1951년 8월10일에 극동관계 담당 국무차관보 딘 러스크(Dean Rusk)가 주미대사 양유찬(梁裕燦)에게 보낸 편지를 이용하여 마치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러스크 서한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하나의 편지에 불과하다. 그 편지는 결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는 아니다.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는 기존의 자료

*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영어과 초빙교수 역임

들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 필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리스크 서한에 나오는 영문들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고 기존에 연구 발표된 한국의 논문들과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논문들을 근거로 논의를 진행한다. 본 논문은 죽도문제연구회의 왜곡된 영유권 조작비판과 왜곡된 자료해석을 지적하고, 또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영토인지를 논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일본의 영유권 논리조작 실태

2.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왜곡된 해석

일본은 독도를 침략하기 위하여 울릉도에 대하여 호칭하던 죽도라는 명칭을 멈추고 이제는 독도를 죽도(다게시마)라고 부르며 그들의 독도에 대한 영토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던 친숙한 장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당시 국제사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시네마현 죽도문제연구회의 후지이 캔지(藤井賢二)는 「대일강화조약과 죽도-사실에 근거한 논의를」¹⁾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죽도가 일본의 영토인 중요한 근거로서 1951년 9월 8일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있다. 동년 7월 19일, 대일강화조약 작성을 진행하고 있던 미국에게 한국은 죽도를 일본영토로부터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조사를 한 뒤 8월 10일에 “죽도(독도 혹은 리앙쿠르암)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돌섬은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은 결코 없다.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의 영토로 주장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라고

1) 후지이 캔지(2015.9.27) 「대일강화조약과 죽도-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山陰中央新報』, p.24.
Web죽도문제연구소,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
(검색일: 2016.10.06.)

기록한 문서(리스크서한)를 통해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렇게 평화조약 제2조에 규정된 일본이 포기해야하는 영토는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으로, 죽도(독도)는 일본의 영토로서 남은 것이다.

여기에서 후지이 캔지가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그는 1951년 9월8일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죽도)²⁾가 일본의 영토인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명시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일본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연구자들은 아래에 언급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내용을 잘 살펴보기를 바란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2장 영토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CHAPTER II

TERRITORY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³⁾, Port Hamilton⁴⁾ and Dagelet⁵⁾.

이 평화조약의 제2장 제2조 (a)에 나오는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제주도, 거

2) 이후 본 논문에서 독도(혹은 죽도)를 독도로 표기한다.

3) 유럽의 배로서는 제주도를 처음 발견한 네덜란드의 배(Quelpaert 혹은 Quelparte)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된 이름. 『위키 백과사전』, <https://en.wikipedia.org/wiki/Jejudo>(검색일:2016.10.6.)

4) 조선 현종 11년(1845)영국이 전라남도 거문도에 붙인 이름. 고종22년(1885)에 영국이 강점한 바 있다.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0685100>(검색일:2016.10.06.)

5) 유럽에서는 Dagelet Island 혹은 Argonaut Island, 중국에서는 Dingbian(定邊), 그리고 일본에서는 Utsuryo(鬱陵島)라고 한다. 프랑스의 천문학자, 시계제작인, 수학자인 Joseph Lepaute Dagelet (1751-1788)의 이름을 따서 지었음.

『위키 백과사전』, <https://en.wikipedia.org/wiki/Ulleungdo>(검색일:2016.10.06.)

문도, 울릉도를 포함한(including)” 한국에 대한 “모든(all) 권리, 모든(all) 자격, 모든(all) 영유권”을 일본이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영어에서 ‘all’이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이 경우에 있어서 뒤에 나오는 세 단어를 모두 수식하여 주기 때문에 “모든 권리, 모든 자격, 모든 영유권”을 일본이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including’라는 단어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른 추가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법적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옥스퍼드 사전에 나오는 예⁶⁾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The car had been chased by a number of people, including security guards from a number of shops.

위의 문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바와 같이 ‘including’의 의미는 “많은 가게의 보안요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그 자동차는 추적을 당했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a number of people)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이 보안요원들(security guards)이다. 위의 사전은 ‘including’과 비슷한 말로 ‘as well as(~뿐만 아니라),’ ‘plus(~더해서),’ 그리고 ‘together with(~와 함께, ~와 더불어)’라는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다. ‘including’이란 단어가 그러한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장 제2조 (a)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다른 기타 모든 한국의 부속 섬들(독도는 당연 포함됨)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한국영토에 부속된 모든 섬들의 이름을 모두 나열하여 기록할 수는 없었다. 이 조약에서 독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후지이 캔지의 말처럼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오히려 ‘including’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설명하고 있듯이 독도가 “모든 권리, 모든 자격, 모든 영유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2. 일본의 조작된 로비활동

후지이 캔지는 “1951년 7월 19일, 대일강화조약 작성을 진행하고 있던 미국에게 한국은 죽도를 일본영토로부터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국을

6) 『English Oxford Living Dictionaries』, <https://en.oxforddictionaries.com/thesaurus/including>(검색일:2016.10.06.)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일본이 미국에 행한 비밀 로비활동을 숨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1947년 3월 19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은 분명히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제1장 - 영토조항

제4조

일본은 이에 의하여 한국의 모든 권리와 자격 그리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우쓰료)와 리앙쿠르 락(다께시마)을 포함한 모든 작은 한국 근해의 섬들을 포기한다.⁷⁾

Chapter I - TERRITORIAL CLAUSES

Article 4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Utsuryo) Island and Liancourt Rock⁸⁾(Takeshima).

1951년 9월 8일 최종적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한국의 영토로서 독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독도라는 명칭을 삽입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우선, 독도의 명칭이 빠진 이유들 중의 하나는 일본정부가 지속적으로 독도에 관한 로비활동을 미국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문제연구회의 후지이 켄지는 「대일강화조약과 죽도-사실에 근거한 논의」 이란 글에서 도리어 한국이 미국에게 잘못된 요구를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비밀리에 엄청난 로비를 미국에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이어가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계속하였다. 일본은 미 국무부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들을 포섭하였다. 일본이 포섭한 인물은 미국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와 일본의 정치고문을 역임한 윌리엄 시볼드(William Joseph Sebald)였다. 일본계 여성(장모가 일본인)을 아내로 두었던 시볼드는 로비스트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펼쳐왔다. 그는 1925년 일본 주재

7) 1947년 3월 19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8) 1947년 3월 19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원본에서는 Liancourt Rock에 복수형을 뜻하는 -s가 빠져있었음.

미국 대사관에 무관으로 배속되었고 1933년부터 1941년까지 일본 고베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 후 그는 연합군최고사령부(SCAP) 임시 일본 주재 미국정치고문실 참모 겸 연합군 외교보조단 특별보좌역을 맡았다. 윌리엄 시볼드는 일본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을 만났고 일본인들과 친숙하였다. 심지어 그는 1945년 일본 동경대학 법학석사와 1949년 일본 동경대학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았다.⁹⁾ 윌리엄 시볼드에 대하여 마크 로브모(Mark Lovmo)는 “캐네스 영(Kenneth T. Young)¹⁰⁾을 비롯해서 윌리엄 시볼드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윌리엄 시볼드는 미국 정부의 고위간부였고 일본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일본 정부 측의 지인들로부터 독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독도가 당연히 일본의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좀 더 공식적인 방법으로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과 홍보를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¹¹⁾(유튜브, 19:13-20:08초)라고 말하고 있다. 버지니아대학교 법대 교수인 마이론 노드키스트(Myron H. Nordquist)¹²⁾는 “저는 미국무부 출신입니다. 미국무부에서는 처음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본으로부터의 영향력 때문인지 아니면 고위층의 누구로부터의 영향력 때문인지 몰라도 일이 애매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한국의 요구가 더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좋다고 정치적 고위층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¹³⁾(유튜브, 20:37-21:08초)라고 증언하면서 일본정부의 로비활동으로 국무부 내부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고 말한다.

일본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독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 있던 미

9) 『위키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9C%8C%EB%A6%AC%EC%97%84_%EC%8B%9C%EB%B3%BC%EB%93%9C#.EC.B9.9C.EC.9D.BC._EA.B4.80.EB.A0.A8._EC.9E.85.EC.9E.A5(검색일:2016.10.06.)

10) 캐네스 영(Kenneth T. Young, Jr., 1916-1972)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행정부 시절(1953-1961) 미국무부에서 근무하였고 필리핀 남동지역 담당, 태국미대사로 근무(1961-1963). 동북아과장으로 있을 때인 1952년 11월5일, 부산에서 근무하던 주한미대사 앨런 라이트너(E. Allan Lightner)에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보낸 편지로 유명하다.

11) KBS 파노라마(2014.02.27.22:00), 「1952년 독도 폭격!」: https://youtu.be/_vxrOsQRqCQ(검색일:2016.10.06.)

12) 버지니아법대에서 법학박사(S.J.D.)학위를 받고, 그 대학의 해양법과 정책센터 부소장 겸 편집장, 미공군사관학교교수역임(1993-1998), 미국무성법률고문(1970-1978)역임, <http://www.virginia.edu/cnsl/bio/nordquist.html>(검색일:2016.10.06.)

13) KBS 파노라마(2014.02.27.22:00), 「1952년 독도 폭격!」: 상동.

국무부를 상대로 날조된 로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세계 사람들에게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에 소속된 적이 결코 없다고 거짓을 홍보하며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였다. 그 결과, 1949년 12월 29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6차 개정안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포함하였다.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최종 문안에서 독도의 언급이 빠졌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의 추악한 로비활동으로 인하여 조약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고 독도의 명칭이 그 조약에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51년 8월10일 당시 극동관계 담당 국무차관보 러스크(Rusk, Dean)와 주미 대사 양유찬(Yang, You-Chan)간의 주고받은 편지에 나오는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according to our information)”이란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미국무부가 독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독도에 관한 문헌들을 분석하고 또 기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얻은 정보에 따르면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독도에 대한 정보가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무부는 그 누군가가 그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입장이었다. 일본이 미국에게 독도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알려주었던 것이다. 1947년 6월 일본 외무성이 비밀리에 제작한 홍보문서 『일본영토에 인접한 작은 섬들(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¹⁴⁾(유튜브, 16:33-16:50초) 일본은 독도에 해당하는 한국말이 “전혀 없다(none exists)”고 거짓말로 홍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를 부르는 한국 명칭은 존재하는 반면에 리앙쿠르 바위(독도)에 해당하는 한국 명칭은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만들어진 지도들에서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It should be noted that while there is a Korean name for Dagelet, none exists for the Liancourts Rocks and they are not shown in the maps made in Korea.

북한에 소속된 섬을 제외한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에 소속된 섬의 수는 유인도가 494개이고 무인도가 2,721개이다(해양수산부연안포탈 도서 분포 현황).¹⁵⁾

14) KBS 파노라마(2014.02.27.22:00), 「1952년 독도 폭격!」: 상동.

일본의 주장처럼 한국의 지도에서 독도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옛 지도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일본의 논리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일본의 논리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섬들 중에서 옛 지도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는 모든 섬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당시에는 현재처럼 정밀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바위로 된 작은 섬들을 포함한 모든 작은 섬들이 모두 지도상에 그려지지 않는 것이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관보 제 1716호(고종 광무4년, 27일)에 의하여 한국은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전도와 죽도 그리고 독도(석도)를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외무성은 숨기고 비밀 홍보문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마크 로브모(Mark Lovmo)는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이 비밀 홍보문서는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까지 일본지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발전시킬 수 없는 나라이며 일본이야말로 독도를 발전시킬 충분한 힘을 가진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왜곡된 정보를 미국인들에게 설명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거짓설득에 의하여 미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연합국 사령부는 그러한 일본의 왜곡된 홍보로 인하여 혼선을 겪게 되었습니다.”(유튜브, 17:20-44초)¹⁶⁾ 라고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역사적으로도 문헌적으로도 명백히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미국과 연합국에 홍보하여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도록 온갖 수단을 강구하였다. 1947년 6월 일본 외무성이 비밀리에 제작한 홍보문서의 책 제4권 제2장에서는 실제로 일본은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까지 일본에 소속된 작은 섬들이라고 홍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¹⁷⁾(유튜브, 16:06-14초)

MINOR ISLANDS

15) 『위키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C%9D%98_%EC%84%AC_%EB%A%A9%EB%A1%9D#.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EC.9D.98_%EC.84.AC_%EB.AA.A9.EB.A1.9D(검색일:2016.10.06.)

16) KBS 파노라마(2014.02.27.22:00), 「1952년 독도 폭격!」: 상동.

17) KBS 파노라마(2014.02.27.22:00), 「1952년 독도 폭격!」: 상동.

ADJACENT TO
JAPAN PROPER

====☆=====

Part IV 제4권

Minor Islands in the Pacific

Minor Islands in the Sea of Japan

FOREIGN OFFICE

JAPANESE GOVERNMENT

JUNE 1947

Chapter II. Minor Islands in the Japan Sea

Introduction

I. Liancourt Rocks (Take-shima)

- 1. Geography
- 2. History
- 3. Industry

II. Dagelet Island (Matsu-shima, Utsuryo or Ul-lung Island)

- 1. Geography
- 2. History
- 3. Industry

일본이 미국에게 행한 로비의 정황은 많은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일본이 1945년 9월2일 항복문서에 사인한 후에,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일을 한다. 1946년 1월29일 작성된 연합국최고사령부각서 스캔핀 677호 제3조에는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 북해도, 본주, 구주, 사국과 약 1천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리앙쿠르(Liancourt Rocks=독도=죽도), 제주도 등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고 한국의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946년 6월22일 스캐핀 103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b) 이에 의거하여 일본의 선박들이나 국민은 독도(북위 37°15′, 동경 131°53′)에서 12마일 이내에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언급한 섬(독도)에 접촉도 하지 말아야 한다.

(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37°15′ North Latitude, 131°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위의 규정에 따르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 초안대로 갈 경우 불리하다는 불안감을 일본은 느꼈다. 그리하여 일본외무성 1947년 홍보문서를 비밀리에 발간하였던 것이다.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는 그가 쓴 『독도 1947』에서 일본 외무성은 그해 1947년 6월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의 부속도서로 명시한 팸플릿을 제작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배포했고 이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결정적 자료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이 홍보문서가 1948년 이후 맥아더 사령부와 미국 무부 등이 독도 영토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문서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⁸⁾ 일본이 독도에 관하여 행동한 왜곡된 홍보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시볼드는 “제 6조: 독도의 재고를 권고합니다. 이 섬들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오래된 것이고 타당하게 보입니다(Article 6: Recommend reconsideration Liancourt Rocks(Takeshima). Japan’s claim to these islands is old and appears valid.)”라고 1949년 11월 14일 미국정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일본 측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 뒤 시볼드는 1949년 11월 19일에 “독도가 미국의 영토가 될 시에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하는 편지를 보냈다.¹⁹⁾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을 지냈으며 전 주미대사였던 시모다 다케소(下田武三)의 회고록 『전후 일본 외교의 증언: 일본은 이렇게 재생했다(戰後日本外交の証言: 日本はこうして再生した)』(1984)에서 시볼드에게 수없이 로비를 펼쳐온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²⁰⁾(유튜브, 37:09-50초)

18) 정병준(2010) 『독도 1947』 돌베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81112391> (검색일:2016.10.06.)

19) 『판지일보』, 역대 대통령 별 독도분쟁 대응(부록):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2015.11.05.),

<http://www.ddanzi.com/ddanziNews/50099172> (검색일:2016.10.06.)

“나는 도쿄 니혼바시(日本橋)의 미쓰이(三井) 본관에 있었던 윌리엄 시볼드의 사무실을 늦은 밤 비밀리에 수없이 방문하여 여러 차례 보고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따라서 일본 측의 자료가 충분히 전달되어 당연히 미국 측이 이것을 참고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모다 다케소의 회고는 당시 일본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증언에서도 뒷받침된다. 요시다 총리는 회고록 『회상십년(回想十年)』에서 “조약 입안 시 가능한 한 우리 편에 유리하도록 고려될 수 있게 손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포츠담 선언에서 언급한 ‘일본이 침략에 의해 취득한 영토’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석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자료는 영토문제만 해도 일곱 권의 책이나 될 정도로 방대한 규모였다”고 밝히고 있다.²¹⁾ 일본이 지속적으로 한국의 영토에 관하여 미국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샌프란시스코 초안대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내용이 그 조약에 삽입되었을 것이다. 호사카 유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²²⁾(유튜브, 37:51-38:30초)

“사실, 일본 쪽의 정보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연합국은 일본 내의 지리적인 역사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시다 내각은 기밀문서를 계속 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것을 참고로 하기 시작해서 일본영토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참고가 되었다고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의 로비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 국무성과 연합국에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모다 다케소와 요시다 시게루와 같은 일본인들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기 위하여 엄청난 로비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는 마치 한국이 미국에 엄청난 로비를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활용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의 영토에 대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 KBS 파노라마(2014.02.27.22:00), 「1952년 독도 폭격!」 : 상동.

21) 정병준(2005.5.24.) 「『역사비평』 여름호, 독도분쟁 장본인 시볼드 조명」
<http://kankan1.egloos.com/m/2465306> (검색일:2016.10.07.)

22) KBS 파노라마(2014.02.27.22:00) 「1952년 독도 폭격!」 : 상동.

2.3. 리스크 서한의 법적구속력

후지이 켄지는 국무차관보 리스크와 주미대사 양유찬이 주고받은 리스크 서한에 나오는 “이 돌섬은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다.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의 영토로 주장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호리 가스오(堀 和生) 교토(京都)대 교수는 「일본, 1905년에 타케시마(竹島)를 영토로 편입」이라는 논문에서 메이지 10년(1877년) 3월20일자로 되어 있는 정부문서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과 관련이 없는 섬이라고 지적했다.²³⁾ 독도와 관련하여 올바른 말을 하는 일본학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일 간에 있어서 독도 영유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독도, 다른 말로, 타케시마 또는 리양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보통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암석층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적이 결코 없고, 1905년경 이후부터 쪽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도 지청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은, 전에는 결코 한국에 의해 영유권의 주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As regards the island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리스크 서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never”란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정보에 의하면 한 번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었다는 뜻이다. 미국이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관보 제 1716호에서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전도와 죽도 그리고 독도(석도)를 관할한다는 사실

23) 「日학자 '獨島는 일본과 관련 없다' 문서 공개」 『연합뉴스』(1997.10.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4197105>(검색일:2016.10.07.)

을 공포하였음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러스크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이 1905년 불법으로 한국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다. 아니면 미국이 그 정보를 알고 있었을지라도 일본의 거짓 홍보로 인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호사카 유지는 “미국이 러스크 서한을 연합국도 모르게 작성해 한국 대사관에만 보낸 것은 일본의 영토를 연합국이 결정하도록 한 포츠담 선언을 어긴 월권행위”라고 주장한다.²⁴⁾

후지이 캔지는 “이렇게 평화조약 제2조에 규정된 일본이 포기해야하는 영토는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으로, 죽도(독도)는 일본의 영토로서 남은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⁵⁾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후지이 캔지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러스크 서한에 근거하여 마치 미국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 편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과정 중에 일어난 서신 교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러스크 서한은 국가 간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 그러므로 일본 시마네현 독도 연구자들은 러스크 서한을 기초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많은 한국의 역사적 문헌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을 시마네현 독도연구자들은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다.

2.4.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역사적 증거

우선 『삼국사기』 권 4의 지증왕 13년(512년) 6월 여름에 하슬라주(지금의 강릉지역)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우산국의 영토”라고 『동국문헌비고』에도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²⁶⁾ 일본은 이 당시에 독도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사실 지금도 맑은 날에는 우리 한국인들은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찰할 수 있다. 울릉도 사람들은 고대시대부터 독도가 당연히 울릉도의 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019년 7월24일에 우산국의 민호로서 이전에 여진에게 잡혀갔다가 도망쳐온 자들이 모두

24) 호사카 유지(2010.06.09.) 「‘독도는 일본 땅’ 러스크 서한은 美 월권행위」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06/09/0701000000AKR20100609120200004.HTML>(검색일:2016.10.8.)

25) 후지이 캔지(2015.09.27.) 「대일강화조약과 죽도-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상동.

26)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검색일:2016.10.09.)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0년 7월 기묘조).²⁷⁾ 1022년 7월8일에 도병마사는 “우산국 백성으로 여진의 노략질을 피하여 도망하여 온 자는 예주에 두고 관에서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하여 아주 편호하라”고 하니 이를 받아들였다(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13년 7월 병자조).²⁸⁾ 『세종실록』에 따르면 조선시대(1454년)에도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두 섬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세종실록 권153). 그리고 1667년 시네마현 동부의 지방관료였던 일본인 이즈모가 쓴 『은주시청합기』에 따르면 일본의 서북경계는 오키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²⁹⁾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울진군 우산도 울릉도조에는 두 섬 즉 우산도와 울릉도가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1770년 『동국문헌비고』의 여지지에 울릉도와 우산도는 우산국의 영토이며 이 우산도를 일본 사람들은 송도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⁰⁾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일본은 당시에 송도라고 부르는 것을 지금 다케시마라고 부른다. 1696년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의 대상으로 막부 당국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한 묶음으로 하여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³¹⁾ 1871년에 출간한 『죽도잡지』는 울릉도에 관한 기록으로서 독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이유는 울릉도를 도항하는 과정에 독도를 경유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로서의 증거라는 것이다.³²⁾ 1947년 6월 일본 외무성이 비밀리에 제작하여 미국과 연합국에 보낸 홍보문서 『일본영토에 인접한 작은 섬들(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사람들은 고대시대부터 독도(리앙쿠르 바위)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의 문헌적 증거는 1667년에 출간된 책 『인슈시초고키(隱州視聽合紀)』(『오키도: 견문수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27)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상동.

28)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상동.

29) 김중식(2010.03.26.) 「날날이 파헤친 독도사」.

<http://gynew.co.kr/articleview.asp?intnum=171838&asection=001011> (검색일:2016.10.09.)

30)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상동.

31) 송휘영(2016) 「『天保竹島一件』을 통해 본 일본의 울릉도·독도인식」 『일본문화학보』 68, 한국일본문화학회, pp.5-28.

32) 최장근(2016) 「19세기 중엽, 『죽도잡지』로 보는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인식」 『일본문화학보』 68, 한국일본문화학회, pp.29-48.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³³⁾(유튜브, 16:23-16:50초)

As stated in the introduction, the Japanese knew the existence of the Liancourt Rocks from the ancient times. But the earliest documentary evidence of this knowledge is to be found in the *Inshu Shicho Goki* ³⁴⁾(Oki Province: Things Seen and Heard), a book published in 1667, which contains the following description:

오키도 북서쪽으로 이틀정도의 거리에 마츠시마가 있다. 그리고 하루 더 가는 거리에 다케시마가 있다. 후자(다케시마)는 이소타케시마³⁵⁾라고 일컬어지는데 대나무와 물고기 등이 풍부하다. 여기 나오는 마츠시마는 독도(리앙쿠르)를 언급하는 것이 명백하다(도해).

To the northwest from the Province of Oki there is Matsu-shima at a two days' distance, and at another day's distance further out there is Take-shima. The latter, also called Iso-take-shima, is rich in bamboo, fish etc. It is clear that Matsu-shima here refers to the Liancourts(Illustration).

일본외무성이 발간한 위의 홍보책자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의 주장들이 일관성이 없으며 앞뒤가 맞지 않으며 신뢰성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일본의 문헌인 『인슈시초고키(隱州視聽合紀)』에도 송도(마츠시마)라는 지명이 나온다. 두 권의 책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와 『인슈시초고키(隱州視聽合紀)』(1667)에는 모두 송도라는 지명이 나온다. 일본은 이 홍보 책자에서 송도(마츠시마)를 독도(리앙쿠르바위)를 가리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한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일본의 홍보 책자 제4권 제2장 「일본해의 작은 섬들(Minor Islands in the Japan Sea)」이라는 제목에서 “독도에 해당하는 한국어름이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만들어진 지도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³⁶⁾(유튜브, 16:33-16:50초) 앞에서 살

33) KBS 파노라마(2014.02.27.22:00), 「1952년 독도 폭격!」: 상동.

34) 『인슈시초고키(隱州視聽合紀)』

<http://blog.naver.com/bohakdang123?Redirect=Log&logNo=60104331585>

35) 일본사람들은 울릉도를 이소타케시마라고 불렀다.

36) KBS 파노라마(2014.02.27.22:00), 「1952년 독도 폭격!」: 상동.

펴본 바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와 『인슈시초고키(隱州視聽合紀)』(1667)에는 모두 독도의 명칭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1770년에 송도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우산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일본 사람들은 그때 우산도를 송도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우산도를 오늘날 독도라 부르고 있으며, 일본 사람들은 오늘날 이 우산도를 다케시마(독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홍보책자에서 한국에서 “독도에 해당하는 한국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만들어진 지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2.5. 시모조 마사오의 무주지 이론 비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명백한 역사적 문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1905년 1월에 독도를 무인도라고 하여 ‘무주지’로 국제법에 의거하여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³⁷⁾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모조 마사오가 주장하는 1881년보다 훨씬 이전인 신라시대 지증왕 13년(512년)에 지금 강릉지역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울릉도에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우릉성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릉성 사람들은 울릉도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는 독도를 생활근거지로 삼았다.³⁸⁾ 독도는 결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우리 한국인들의 생활터전이었기 때문에 시모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주지 이론에 의하여 일본이 편입한 일본의 영토가 결코 아니다. 그가 1905년 1월에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라고 하여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시모조의 논리는 미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무조건적으로 한국영토로서의 논거를 부정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³⁹⁾ 안용복(安龍福)이 1693년에 울릉도 부근에서 고기를 잡다가 왜인들에게 일본으로 붙잡혀 갔다. 안용복은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도쿠가와 막부의 관백은 안용복과의 대면 후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37) 시모조 마사오(2011.04) 「죽도는 왜 계속해서 침탈당하는가」. 『해외사정』 pp.19-38. Web 죽도문제연구소.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index.data/kaigaijijo201104shimojo.pdf>

38) 최장근(2014) 『일본의 침략적 독도 도발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제이앤씨, p.7.

39) 최장근(2015) 「‘竹島’ 일본영토론자들의 사고논리의 특징에 관한 분석-시모조 마사오를 한 유형으로-」 『일본문화학보』 66, 한국일본문화학회, pp.427-449.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백기주 태수를 시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문서를 써주고 안용복을 후대하여 돌려보냈다.⁴⁰⁾ 안용복이 1693년에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일본에게 알렸고 일본의 중앙정부(막부)도 이를 인정했다는 문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조 마사오와 일본정부는 독도가 무주지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편입하였다고 영유권을 조작하고 있다.

시모조 마사오는 한일이 분쟁하고 있는 땅 독도가 해도 등에 그려지게 된 것은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동도를 발견하고, ‘리앙쿠르’ 암초라고 호칭한 이후부터라고 말한다. 그는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무인도인 독도를 ‘무주지’로 보고 국제법에 의거하여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모조 마사오의 주장과는 달리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리앙쿠르(독도)라는 호칭을 부르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독도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프랑스는 그들의 관점에서 1849년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포경선의 이름을 따서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라고 불렀다. 그리고 영국은 1855년 영국 군함 ‘호넷’호가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호넷 락스(Hornet Rocks)’라고 불렀다. 프랑스와 영국은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각각 ‘리앙쿠르 락스’와 ‘호넷 락스’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프랑스와 영국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강제로 편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를 무주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일본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그 섬을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처음 발견한 것이다. 역사적 사실과 문헌들은 한국이 그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독도를 발견하였고 독도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맺으면서

독도는 고대시대부터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활터전이 되어왔다. 그러나 일본의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는 1905년 이전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

40) 이상태(2011)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독도연구』 제10, p.17.

토로 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꾸미고 있다. 독도는 지증왕 13년(512년) 6월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우산국의 영토”라고 『동국문헌비고』에도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이 당시에 독도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명백한 역사적 문헌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시모조 마사오는 1905년 1월에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이론을 통하여 국제법에 의거해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는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규정하고 있다. 1947년 3월 19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1-5차 초안들은 분명히 독도(리앙쿠르 바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일본의 거짓홍보와 일본의 미국에 대한 로비활동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선언한 조약이 아니다. 지금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거짓 정보를 미국과 전 세계에 유포하고 있다. 일본의 죽도문제연구회는 진실을 왜곡시키는 독도 영유권 조작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수희(2011) 「죽도=독도 문제와 일본국가」 『독도연구』 제10호, pp.281-324.
- 김종식(2010.03.26.) 「날날이 파헤친 독도사」,
<http://gynew.co.kr/articleview.asp?intnum=171838&asection=001011>(검색일:2016.10.09.).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검색일:2016.10.09.).
- 마이론 노드퀴스트(Myron H. Nordquist),
<http://www.virginia.edu/cnsl/bio/nordquist.html>, (검색일:2016.10.06.).
- 시모조 마사오(2011.04) 「죽도는 왜 계속해서 침탈당하는가」 『해외사정』, pp.19-38.
 Web죽도문제연구소<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검색일:2016.10.09.).
- 송휘영(2016) 「『天保竹島一件』을 통해 본 일본의 울릉도·독도인식」 『일본문화학보』 68, 한국일본문화학회, pp.5-28.
- 「역대 대통령 별 독도분쟁 대응(부록):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015.11.05.) 『딴지일보』,
<http://www.ddanzi.com/ddanziNews/50099172> (검색일:2016.10.06.).
- 이상태(2011)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독도연구』 제10호, pp.17-62.
- 정병준(2010) 『독도 1947』 들베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81112391>
 (검색일:2016.10.06.).

정병준(2005.05.24.) 「‘역사비평’ 여름호, 독도분쟁 장본인 시볼드 조명」 『연합뉴스』 ,
<http://kankan1.egloos.com/m/2465306> (검색일:2016.10.07.).

최장근(2014) 『일본의 침략적 독도 도발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제이앤씨, p.7.

_____ (2015) 「‘竹島’ 일본영토론자들의 사고논리의 특징에 관한 분석-시모조 마사오를 한 유형으로-」 『일본문화학보』 66, 한국일본문화학회, pp.427-449.

_____ (2016) 「19세기 중엽, 『죽도잡지』로 보는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인식」 『일본문화학보』 68, 한국일본문화학회, pp.29-48.

호사카 유지(2010.06.09.) 「‘독도는 일본 땅’ 러스크 서한은 美 월권행위」 『연합뉴스』

후지이 켄지(2015.09.27.) 「대일강화조약과 죽도-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山陰中央新報』 ,
p.24. Web죽도문제연구소<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검색일:2016.10.09.).

KBS 파노라마(2014.02.27.22:00) 「1952년 독도 폭격!」 ,
https://youtu.be/_vxrOsQRqcU (검색일2016.10.06.)

<사진>

『네이버국어사전』 , Port Hamilton.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0685100>
(검색일:2016.10.06.).

『위키 백과사전』 , Quelpart. <https://en.wikipedia.org/wiki/Jejudo> (검색일:2016.10.06.)

『위키 백과사전』 , Dagelet Island. <https://en.wikipedia.org/>(검색일:2016.10.6.)

『위키백과사전』 , William Joseph Sebald, <https://ko.wikipedia.org/>(검색일:2016.10.06.)

『English Oxford Living Dictionaries』 , including,
<https://en.oxforddictionaries.com/thesaurus/including> (검색일:2016.10.06.)

논문 투고 일자 : 2016. 10. 10.
논문 심사 일자 : 2016. 11. 02.
게재 확정 일자 : 2016. 11. 03.

 < 要旨 >

 竹島問題研究会の独島領有権の捏造に対する論証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とラスク書簡を中心に—

兪炳久

独島は古代より一貫して大韓民国の人々の生活の場となってきた。しかし、日本は1905年、大韓民国政府の許可なく独島を無主地という名分の下で一方的に日本の領土に編入した。そのような日本の行動は領土を侵略する行為である。日本は、1905年以前には韓国の領土であったことがない無主地を編入したものであると米国や世界を欺瞞している。しかし韓国は、512年には既に独島が韓国の領土であったことを示す文献を所有している。また、1900年10月25日、大韓帝国勅令第41号によって、韓国は鬱陵島の付属の島であると規定している。さらに、1947年3月19日、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1次～5次草案では、確かに独島(リアンクル・ラックス)を、韓国の領土に含めていた。一方で、日本の虚偽の広報と日本のアメリカに対するロビー活動が1951年9月8日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に影響を及ぼしたのは事実である。しかしながら、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は独島が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宣言したものでない。本論文は、日本が米国を含む連合国に、独島に関する虚偽の情報を伝達したことを示す多くの資料を提示する。日本は今もお独島に関する虚偽の情報を米国と全世界に流布している。日本と竹島問題研究会は、真実を歪曲し、独島領有権を捏造する行為を中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Dakeshima Issue Research Institute of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in Japan makes
 false documents about Dokdo(Liancourt Rocks or Dakeshima)
 —Focusing o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Dean Rusk's letter—

Yoo, Byeong-Koo

Korean people have known Dokdo or Liancourt Rocks from ancient times and have been catching fish around the island. However, Japan incorporated the island into the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illegally without asking the Korean Government's permission. Such behavior of Japan means an act of territorial aggression. Japan has deceived the U.S.A and the world by giving them false information about Dokdo. Japan says that Dokdo had not belonged to any country before 1905. But Korea has many old documents showing that Dokdo belongs to Korea. For example, Kim Bu-Sik's book, *Samkusaki*(1145), says that Dokdo belonged to Korea in 512. The Korean Empire Ordinance 41 on October 25, 1900 also says that Dokdo belongs to Korea. The first five draft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ays that Dokdo belongs to Korea. But because Japan gave false information to U.S.A and other countries, the final draft of the treaty does not include Dokdo. Howev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does not mean that Dokdo belongs to Japan. This paper shows how Japan has been deceiving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bout the island from the past up until now. The Japanese government and Dakeshima Issue Research Institute of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in Japan should stop the fabricated reports about Dokdo.